

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390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2. .
제출자 : 안산시장

제안이유

- 상위법령 일부개정에 따른 「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」 일부개정(조문개정)

주요내용

- 조문 중 「혈액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 → 제2조의3(안 제1조, 제2조제1호)
- 조문 중 「혈액관리법」 제4조제1항, 제4조의4 → 제4조의3, 제4조의6(안 제2조1호, 제8조제1항)

개정조례안 : 【붙임 1】

신·구조문대비표 : 【붙임 2】

관계법령발췌서 : 【붙임 3】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예산수반사항 : 【붙임 4】

-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24. 1. 4. ~ 2024. 1. 24. 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【붙임 5】
- 방침결정문 : 【붙임 6】

[붙임 1]

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혈액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
“「혈액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의3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혈액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1항과 「혈액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의 규정”을 “「혈액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의3과 「혈액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의3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법 제4조의4”를 “법 제4조의6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상록수보건소 보건정책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보건정책과장 이영옥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의약관리팀장 배진수
	담당자 성명·전화	이영수 (행정 5940)

[불임 2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혈액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의 규정의 의하여 시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시민의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헌혈권장활동”이란 「혈액 관리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한다) 제4조제1항과 「혈액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안산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.</p> <p>2. ~ 3. (생 략)</p> <p>제6조(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) ① (생 략)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대상, 지원방법, 지원절차 등은 「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「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에 따른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혈액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의3에 따라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「혈액 관리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한다) 제4조의3과 「혈액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의3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제8조(헌혈추진협의회) ① 시장은
법 제4조의4에 따라 헌혈 증진을
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
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 사회의
시민·단체 또는 공공 기관이
참여 하는 안산시헌혈추진 협의회
(이하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구성 할
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8조(헌혈추진협의회) ① ---
법 제4조의6-----

-----.
② (현행과 같음)

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9-390
------------	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4년 3월 11일
제 안 자 :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

□ 수정이유

- 자치법규의 입법경제성을 고려하여 실익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“「혈액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의3에 따라 시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”를 “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”로 한다. (안 제1조)

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조 중 “「혈액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의3에 따라 시민의 생명 및 건강 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”를 “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<u>제1조(목적)</u> 이 조례는 「혈액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의 규정의 의하여 시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 장활동에 적극 협력 하여 시민의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혈액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의3에 따 라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적극적 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 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